

노동부 신임 산업안전보건국장에 김윤배 前 대전지방노동청장 발령

산업안전 분야를 이끌어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이 새로 선임됐다. 노동부는 18일자로 산업안전보건국장에 김윤배 전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임태희 장관, 정종수 차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국장 체제로 나아가게 됐다. 대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산업안전보건국장이었던 정현옥 국장은 근로기준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1958년 7월 18일 청주에서 태어난 김윤배 신임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청주고, 청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 학국외국어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에는 지난 1982년 행정고시(25회)로 발을 내딛었으며, 그 후로 법무담당관, 총리비서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교육원 교육협력관, 미국펜실베니아 주정부 파견관, 대전지방노동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인사를 통해 허원용 경인지방노동청장, 문기섭 대전지방노동청장 및 박종길 대변인 등을 새롭게 선임했다.

근로환경 개선비용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300명 미만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유해공정 등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명 미만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소음방지설비,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제거설비, 균골격계부담작업 제거용 중량물운반설비 등 약 60여종이다.

소음방지설비의 경우 소음발생원 격리 밀폐설비, 흔들 및 차음시설, 소음차단 휴게실 및 운전실 조성 등, 분진제거설비는 국소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살수·습기 유지설비 등에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제거설비의 경우 불침투성 재료의 바닥,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대체설비 등, 균골격계질환예방 설비는 이동식 대차, 전동지게차, 높이·각도조절 가능 작업대, 인력운반 보조설비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소요금액의 50%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산재자 수, 서비스업 > 제조업

지난해 전체 산재재해자 중 서비스업 재해자가 제조업을 제치고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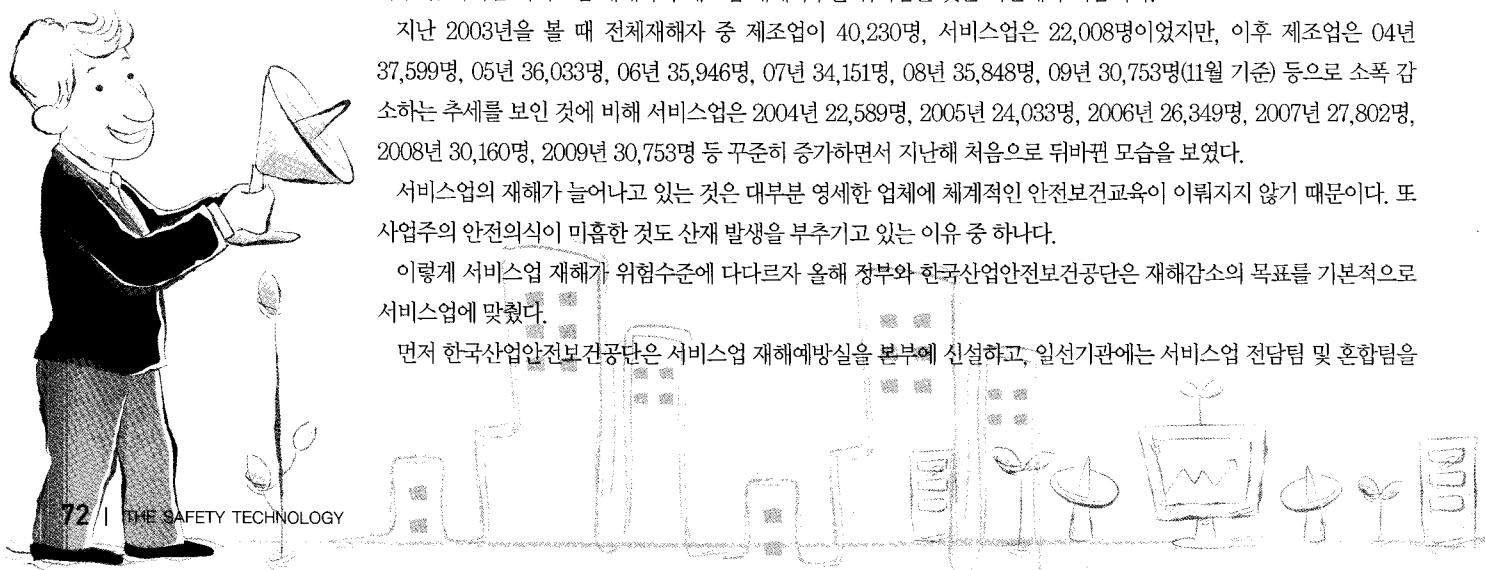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비스업 재해자는 총 30,753명으로 전체 재해자 88,364명의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29,730명, 건설업 18,905명, 기타 8,976명과 비교해 가장 많은 재해자수다. 이처럼 서비스업 재해자가 제조업 재해자수를 뛰어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 2003년을 볼 때 전체재해자 중 제조업이 40,230명, 서비스업은 22,008명이었지만, 이후 제조업은 04년 37,599명, 05년 36,033명, 06년 35,946명, 07년 34,151명, 08년 35,848명, 09년 30,753명(11월 기준) 등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에 비해 서비스업은 2004년 22,589명, 2005년 24,033명, 2006년 26,349명, 2007년 27,802명, 2008년 30,160명, 2009년 30,753명 등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뒤바뀐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의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에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도 산재 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서비스업 재해가 위험수준에 다다르자 올해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감소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맞췄다.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재해예방실을 본부에 신설하고, 일선기관에는 서비스업 전담팀 및 혼합팀을



배치키로 했다. 또한 서비스업종 중 최근 5년간 재해자수가 많은 6개 업종 10만개소에 대해 각종 지원과 함께 안전보건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약 60만개소에 대해 방문 지원을 추진키로 했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정례화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종의 직능단체, 노·사 단체, 지자체들과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공동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서비스업종에서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경우 체계적인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며 "올해에는 서비스 업종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등 9개 분야 추진

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노동부는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위험기계·기구의 균원적 안전성 강화' 등을 포함해 총 9개 분야의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과 최근 산재발생률이 높아지는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내용에 따르면 먼저 노동부는 올해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사업장 105,000개소에 대해 기술, 교육, 재정 등의 패키지 지원이 실시된다.

제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기 위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의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50,000건,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3,000건 등의 목표를 잡았다.

또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12종에 대해서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경우 올해에는 약 15만2천대(20인 이상 약 10만대, 20인 미만 약 5만2천대)를 검사 대상품으로 선정하고 작업환경실태 조사를 기초로 수검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추진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건설부분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대형건설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각종 건설안전 정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이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또 4대강, 고속철도, 경인운하 사업 등 대형국책 공사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도 강화된다. 먼저 위험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및 캥폼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2m 이상 굴착공사·교량공

사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자율관리업체 지정제도 개선된다. 지정요건이 평균재해율 이하에서 '재해율이 우수한 상위 20% 업체'로 강화되며, 명칭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1, 2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며,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국내에서 최초로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50명의 시민안전감시단을 운영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현장 자율점검제도 올해부터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하여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되어 왔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최근 5개 지방청의 점검현장은 약 600개로 전체 대상(약 4,600개) 현장의 13%에 불과했던 바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각 건설사들도 점검 시 지적만 보면 된다는식의 소극적인 대처를 해오면서 부실 및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검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직접 점검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은 현장,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할 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현장 중에서 선정된다. 단,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인근 현장과의 교차점검, 본사의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향후 건설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